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1조(「방위사업법 시행령」의 개정)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3제1항 중 “소요검증의 심의를 위하여”를 “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요검증에 대해 심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”로, “둔다”를 “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”를 “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으로 하되, 필요한 때에는 제5호와 제6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2조(「병역법 시행령」의 개정)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하기 위하여”를 “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”로, “둔다”를 “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”을 “위원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”으로, “지명하거나 위촉한다”를 “지명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병무청장은 제1항의 심의를 할 때 법학·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3(소요검증위원회) ① <u>소요검증의 심의를 위하여</u>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요검증위원회(이하 “검증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20조의3(소요검증위원회) ① <u>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요검증에 대해 심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</u> ----- <u>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<u>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</u>	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으로 하되, 필요한 때에는 제5호와 제6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</u>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④ · ⑤ (생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5조의5(공정병역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77조 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심의하기</u> <u>위하여</u> 병무청장 소속으로 공정 병역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<u>둔다</u> .	제155조의5(공정병역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<u>심의할 필</u> <u>요가 있을 경우</u> ----- ----- ----- <u>구성하여 운</u> <u>영할 수 있다</u> 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 무청장이 지명하고, <u>그 밖의 위</u> <u>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</u> 중에서 병무청장이 <u>지명하거나 위촉한</u> <u>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</u> <u>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</u> .	③ ----- ----- ----- <u>위원은 병무</u> <u>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</u> ----- ----- <u>지명한다. <후단 삭제></u>
1.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	<삭 제>
2. 법학·행정학 또는 의학 등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	<삭 제>
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	④ 병무청장은 제1항의 심의를 할 때 법학·행정학 또는 의학

<u>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 ⑤ ~ ⑦ (생 략)	<u>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</u> <u>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</u> <u>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</u> <u>할 수 있다.</u> ⑤ ~ ⑦ (현행과 같음)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조직관리과	
연 락 처	(02) 748 - 6571